

예산총칙

2013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095,788,692	32,873,661
일반회계	903,669,337	27,110,080
특별회계	192,119,355	5,763,581
공기업특별회계	169,178,625	5,075,359
상수도사업	70,554,051	2,116,622
하수도사업	98,624,574	2,958,737
기타특별회계	22,940,730	688,222
교통사업 특별회계	16,065,880	481,976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982,316	29,469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	2,723,726	81,712
대지보상 특별회계	714,935	21,448
기반시설 특별회계	245,026	7,351
수질개선 특별회계	2,208,847	66,265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1,266,104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21,6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